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2017.10.16.

평 생 교 육 국

I. 서울 공교육 여건 및 교육지원 현황

1 서울 공교육 현황

□ 각급 학교·학생현황

-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생 수는 감소하나 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국지적으로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여 학교 수의 경우 다소 증가

〈 서울시 학교급별 학교·학생수 현황 〉

(단위 : 개교/천명)

연도	계		초		중		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2016년	1,303	976	601	436	384	240	318	300
2015년	1,301	1,022	599	451	384	263	318	308
2014년	1,300	1,065	599	458	383	287	318	320

- 학급당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많으며,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임

〈 서울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초등학교	24.5명	24.3명	24.0명	23.4명 ※전국 평균 22.6명
중학교	31.4명	30.2명	28.5명	26.6명 ※전국 평균 28.9명
고등학교	31.9명	30.9명	30.1명	29.7명 ※전국 평균 30.0명

〈 OECD 국가 학급당 학생수('11~'13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	26.3명	25.2명	24.0명	34.0명	33.4명	32.8명
OECD 평균	21.2명	21.3명	21.2명	23.3명	23.5명	23.6명

□ 교육환경 변화

○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격차 증가 : 5배('13년) ⇨ 8배('16년)

- '16년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5분위(고소득) 교육비 지출 격차 1:8

※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16년) : 1분위(소득 141만원) 83천원, 5분위(소득 906만원) 665천원

○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학교밖 활동 및 전인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 市의 가장 큰 교육문제로 '청소년이 공부 외에 할 만한 일이 없다'고 응답 : 37%

- 전인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 33%

※ '13년 12월 500인 시민원탁회의시 사전설문 조사(시민 847명 응답)

- '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요구 증가

○ 학교폭력 감소 추세에도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과 학부모 불안감 증가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0.1%p, 가해응답율 0.1%p 감소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피해 응답율(%)	1.9	1.9	1.5	1.4
가해 응답율(%)	1.0	0.7	0.6	0.5

※ 폭력피해 장소 : 학교밖(27.6%), 학교안(72.4%, 교실)복도)운동장)

○ 다문화 학생의 지속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15년 다문화 학생수는 11,642명으로
전년대비 18.4%(1,811명) 증가

〈 다문화 학생 현황 〉

구분	'13년	'14년	'15년
학생수(명)	8,594	9,831	11,642
비율(%)	0.78	0.92	1.14



〈 다문화 학생수 변화 〉

○ '16년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OECD 회원국 중 최하

- 어린이·청소년 5명중 1명은 '자살충동' 경험 ('16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

- 서울 중·고생 80.6%가 스트레스 느끼지만 고민상담은 1.2%에 그침('14년)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친구를 선호(37.8%), 해소대상 없음(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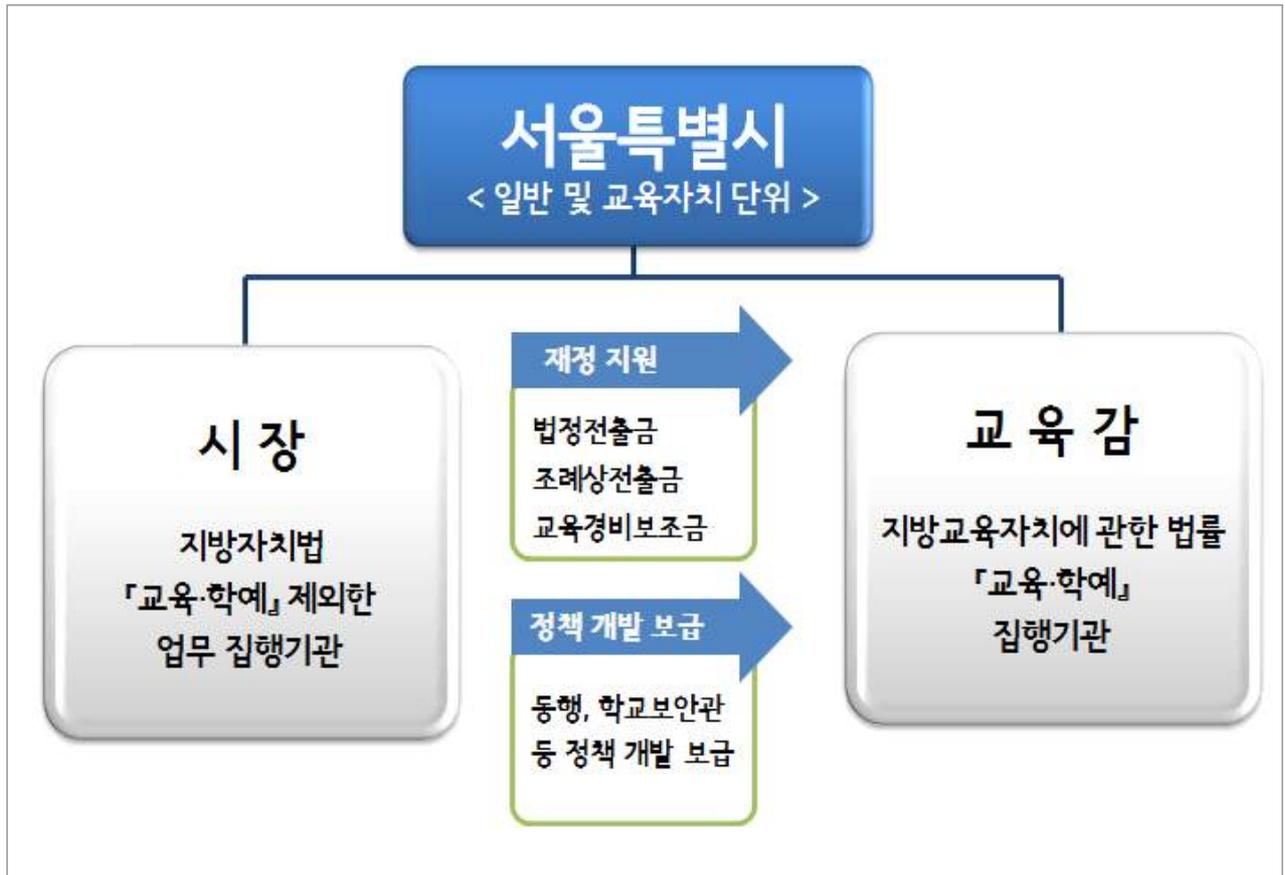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순위 : 스페인(1위), 오스트리아·스위스(2위)

2

교육협력 필요성 및 교육지원 여건

1 교육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기본 관계



○ 서울시의 자치사무 집행기관 - 「市長과 교육감」으로 이원화

<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

-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 등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제101조·103조)
 -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8조)
- ⇒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상호협력이 지역교육 발전에 중요 과제

2 교육지원 여건

□ 시교육청의 취약한 교육 재정

○ 세입 구성 ※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자료

(단위 : 억원)

계		중앙정부교부금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서울시 법정전출금 등)	지방교육채 등 차입금	자체수입	기타이전 및 전년도이월금
'17년	9조 4,409	4조 2,064 (55.1%)	3조 5,519 (37.6%)		1,622 (1.8%)	5,204 (5.5%)
'16년	8조 6,283	5조 0,603 (58.7%)	2조 6,407 (30.6%)	4,211 (4.9%)	1,759 (2.0%)	3,303 (3.8%)

- 재원의 약 90%를 중앙정부와 서울시 이전수입으로 충당
- 국가의 교부금 등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투자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약 30조원 내외의 내국세 20.27% 및 교육세)

○ 세출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인건비	경상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채 및 BTL상환	예비비 및 기타
'17년	9조 4,409	5조 3,657 (56.8%)	7,870 (8.3%)	1조 8,697 (19.8%)	7,272 (7.7%)	6,836 (7.2%)	77 (0.1%)
'16년	8조 6,283	5조 2,483 (60.9%)	7,557 (8.7%)	1조 7,740 (20.6%)	6,568 (7.6%)	1,833 (2.1%)	102 (0.1%)

- '인건비', '경상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65% 이상 차지하여 경직성 강화

➔ 새로운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교육청·학교의 대응한계 속에 교육문제가 시민 삶 전반의 위협요인으로 대두

- 전국 최고 사교육비 지출 - 사교육이 시민 삶의 질 하락의 주요원인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감소하나, 학부모 불안감은 증가 추세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 서울 미래교육을 위한 논의와 준비 필요
 - 향후 5년간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세계경제포럼, 2016)
 - 2030년까지 현존하는 직업의 약 50%가 사라져(토스 프레임, 대번치 연구소 소장)

➔ 시의 교육지원 정책개발과 지원 확대 필요

3 현행 주요 교육지원 사업

□ **법정전출금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교육·학예경비 부담)

※ 법정전출금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세수 중 법정 세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임

(단위 : 억원)

연 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지원액	3조 3,939	2조 7,958	2조 6,398	2조 3,990	2조 3,030	2조 4,342	2조 3,859	2조 3,773	2조 3,866	2조 2,03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서울시 시세(보통세)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전액

○ '17년도 시교육청 예산의 37.6%, 市 일반회계(총계) 예산의 15.3% 수준

□ **추가 재정지원** : 조례상전출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16,467억원('07~'17년)

【조례상 전출금 지원】 - 8,468억원('07~'17년)

○ 지원근거 : 「교육격차해소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06. 7월 제정)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17. 9월 개정)

조례개정	'16년 5월	'13년 10월	'12년 1월	'11년 7월	'10년 11월	'10년 3월	'06년 7월
지원규모	보통세 0.6% 이내	보통세 0.4% 이내	취득세 7% 이내	취득세 3% 이내	취·등록세 3% 이내	취·등록세 2% 이내	취·등록세 1.5% 이내

○ **지 원 액**

(단위 : 억원)

연 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지원액	568	417	405	418	1,912	1,640	1,031	515	578	496	488

※ 친환경무상급식비 2,809억원 포함('11년 393, '12년 1,084, '13년 1,332)

【교육경비 보조금 및 기타 지원】 - 7,999억원 ('07~'17년)

○ 친환경무상급식, 「학교보안관」, 「CCTV 설치」,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등

(단위 : 억원)

연 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지원액	1,630	1,751	1,805	1,729	232	225	295	109	103	60	60

Ⅱ. 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

1.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2.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구현

1]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1] 협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2]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강화

1 협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1 시-교육청-자치구-민간과 상생·협력하는 교육협력사업 추진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14.11.17)의 교육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교육청-자치구-민간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모델 정착

□ 사업개요

- 교육협력사업 : 4개 분야 30개 사업(기존 25, 신규 5)
 - ①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화장실 개선 등 12개 사업
 - ②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 : 특성화고 지원 등 9개 사업
 - ③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강화 : 학교를 평생학습 공간으로 조성 등 8개 사업
 - ④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 사업기간 : 2015~2018년(4개년)
- 사업비('17년) : 1,179억원(서울시 466, 교육청 713)

□ 추진목표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17년 교육협력사업 관리	'17. 7~12월	• 우수사례 5건	• 15건 검토중
추진성과 평가	'17. 6~11월	• 평가 2회(상·하반기)	• 평가 1회

□ 추진실적

- 교육협력사업 주요 추진사항
 -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화장실 만들기 : '16년 440개 학교 → '17년 800개 학교(누계)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 48개교 4,816명 탑승(학교별 1일 평균 100명)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 '16년 20개 → '17년 22개 자치구로 확대
- 신규 교육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및 협의
 - 미래교육 전문가 자문회의(2회, 4월) :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협력 과제논의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6. 1) : 제3기 위원 위촉, 교육협력사업 주요 성과 보고 등
 - 3개 분과(미래교육지원·평생교육·아동청소년) TF 구성·운영(6~9월) : 16회(15건 발굴 검토중)

□ 향후계획

-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TF 운영 : ~ '17.10월
- '17년 추진성과 평가 및 '18년 사업과제 선정 : '17.11~12월

②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법정전출금의 전출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비(조례상 전출금) 지원

법정전출금 지원

- 지원규모 : 3조 3,939억원(시세 보통세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학교용지 매입비 50%)
※ '17년 추경 반영 : 5,885억원
- 지원방법 : 징수된 세액의 90%이상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매월)

교육경비 보조사업(조례상전출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등)
- 지원규모 : 567억원(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 0.6% 이내)
-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교체,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18개 사업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
법정전출금 적기 전출	’17. 1~12월	• 징수세액 정산 후, 다음달 말일까지	• 2조 199억원 전출	59.5
조례상전출금 조기 집행	’17. 1~12월	• 상반기 집행률 : 85% 이상	• 531억원 전출	93.6

추진실적

- 법정전출금 11회 전출 : 1~8월 전출대상액, 1~2분기 정산분, 학교용지매입비
- '17년 제1·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3.3, 5.2)

향후계획

- '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 협의(시-교육청) : '17.10월
- '17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18년 사업 선정) : '17.10월

③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자치구·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 구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미참여 : 중랑·강남·송파구)
- 사업내용
 - 필수과제(마을·학교 연계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선택과제(자치구별 특화사업)
- 사업비 : 333억원(서울시 103, 교육청 102, 자치구 128)

□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마을·학교 연계 학교 교육지원	’17. 3~12월	• 수업방법개선 협력교사 등 학교 지원 : 550개교 • 마을결합형학교 및 교육과정 지원 : 210개교	682개교 244개교	124.0 116.2
동아리 등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17. 3~12월	• 학부모·청소년 동아리 지원 : 600개교	855개교	142.5
민관학 거버넌스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17. 3~12월	• 지역별 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구축 : 22개구	22개구	100
지역특화사업	’17. 3~12월	• 자치구별 특화사업 : 180개	182개	101.1

□ 추진실적

- 운영위원회(3회), 실무추진협의회(6회) 운영
-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 개최(1.18) : 400명(22개 자치구 학생·학부모, 시민, 공무원 등)
- 평가·역량강화·홍보(정책포럼) 3개 분야 TF 운영(5~8월)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우수사례 발굴 및 종합 홍보물 제작·배부(6월)
- 정책포럼 2회 실시 : 4개 시·도 연합포럼(8.26), 지역사회 포럼(9. 2)

□ 향후계획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3차 정책포럼 실시 : ’17.11월
- 지구별 사업 지원 컨설팅 운영 : ~ ’17.12월
- 자치구별 자체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17.11~12월

2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강화

1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 추진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학교 화장실을 사용자가 디자인 기획·설계에서 시공·감리까지 참여, 감성적이고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개선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360개교(※ 교육청 197개교 포함)
- 사업비 : 432억원(서울시 200, 교육청 216, 자치구 16)

□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전면·부분개선, 서양식 변기 교체	’17. 3~12월	• 115개교 개선, 245개교 교체	• 301개교	83.6
양치대(세면대) 설치	’17. 3~12월	• 100개교	• 84개교	84.0

□ 추진실적

-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360개교 선정 지원(3월), 설계 완료 및 공사 시행(7~12월)
 - 노후도, 비용분담비율, 학교장 의지, 지역 및 초·중·고 균형을 고려 선정
 - 증축 9개교, 전면 74개교, 부분 41개교, 양변기 236개교(서양식 변기 비율 60%이하, 변기당 학생수 15명 이상)
- 구강건강 및 보건위생까지 고려한 양치대(세면대) 설치(7~12월)
 - 화장실 외에 복도, 빈교실 등 유휴공간 활용 양치대(세면대) 설치(100개교)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사업 대시민 홍보 강화
 - 기자설명회(1.17), 사진전시회(5월), 홍보존 운영(2개소), 주요 언론매체 보도·홍보 등

□ 향후계획

- 학교별 화장실 공사 추진 : ’17.10~12월
- ’17년 학교 화장실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17.12월

②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 마련 및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립초등학교 48개교 ※ '16년 스쿨버스 만족도(학생·학부모) 조사결과 : 98%
- 선정방법 : 신청학교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심사·선정
- 사업내용 : 통학버스 운영 및 체험활동 지원
- 사업비 : 총 3,255백만원(시비)

□ 추진목표

('17. 8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
등·하교 이용 학생 확대	'17. 3~'18. 2월	•43개교 4,400명 탑승	•48개교 4,816명	109.5
창의체험활동 운영	'17. 3~'18. 2월	•43개교 1,300회 운행	•48개교 900회	69.2

□ 추진실적

- 학교 지원액 조정을 통해 스쿨버스 48개교 확대 지원(1월, 3월)
 - 79백만원('15년) ⇒ 65백만원('16년) ⇒ 66백만원('17년)
- 등·하교 및 창의체험활동 운행횟수 등 학교별 자율적 운영(3월~)
 - 등·하교 각 1회~6회 4,816명 탑승(일 평균 100명/1대)
 - 창의체험활동 약 900회, 18,270명 이용(8월 말 기준)
- 학생·학부모가 안심하는 스쿨버스 안전강화
 - 승·하차도우미 차량탑승, 버스사업자·학교·학부모간 연락체계 구축
 - 운전자·탑승보호자·학생·학부모 대상 전문안전교육 실시(52회, 8월말)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13개교) 및 통학로 안전지도(6개교) 제작

□ 향후계획

- 스쿨버스 이용 만족도 및 현장점검 : '17.10~11월

3]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심배움터 조성

□ 사업개요

- 배치인원 : 562개 국·공립초등학교 1,188명(학교당 2~3명 : 498개교 2명, 64개교 3명)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안전보호 활동
- 소요예산 : 243억원(시비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	’17. 2~ 6월	• 개선안 마련(6월)	• 개선계획 수립(5월)	100
직무교육 및 평가	’17. 7~11월	• 직무교육(7월), 직무평가(11월)	• 직무교육 (8.16~17)	50.0

□ 추진실적

- 학교보안관 활성화 T/F 운영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시행(5.30)
 - 시민대표(시의회), 학부모, 교육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TF 구성
 - ’17. 5월까지 총 6회 TF 운영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7.13)
 - TF 1~6차 회의에서 도출된 고령화 등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 조례상 반영
 - 자격강화, 채용기간 제한(5년),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 해고 및 포상 규정 마련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2회) : 1,078명(90.7%) 참여(8.16~17)

□ 향후계획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18년 채용후보자 체력측정 : ’17.10월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18년 운영계획 수립 : ’17.11월

2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

1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2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지원 확대

1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①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

시민대학 운영 총괄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중심기관으로 본부캠퍼스 조성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송월길 52(舊 서울복지재단)
- 규 모 : 1개동(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485 m^2
- 사업내용 : 건물 리모델링,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체계 마련 등
- 사 업 비 : 895백만원(시비)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본부캠퍼스 리모델링 공사	’17.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완료(6월) • 공사 준공 완료(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용역 완료(7월) • 공사 계약(10월) 	100 -
사무국 구성	’17. 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대학장 공개모집 선발(9월) • 운영조직 구성(10월) 	- -	- -

추진실적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4~7월) 및 공사 계약(10월)
-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 설계 자문단 운영(8월~)
 - 민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 7개 분야 44명(인문학, 시민, 문화·예술, 사회경제 등)

향후계획

-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대학장 선발 : ’17.11월
-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 설계 완료 : ’17.12월
- 본부캠퍼스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준공 : ’17.12월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개관 : ’18. 3월

② 신개념의 평생학습종합센터 「모두의 학교」 설립·운영

시민과 함께 만들고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평생학습종합센터' 로 조성 중인 『모두의 학교』 설립을 통해 신개념의 평생학습 공간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독산동, 舊 한울중학교)
- 사업규모 : 부지 5,616 m^2 , 건물 연면적 2,462.91 m^2 (5층)
- 사업기간 : '15. 4월~'17. 9월('17.10월말 개관)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 프로그램 개발, 모두의 학교 개관·운영
- 사 업 비 : 2,711백만원(시비)

□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
「모두의 학교」 조성	'17. 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공사 완료(9월) • 시민주도, 세대공감 프로그램 개발 완료(3~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공사 완료 • 프로그램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100</p> <p style="text-align: center;">100</p>
「모두의 학교」 개관	'1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식 행사 개최(10.28) 및 운영 	-	-

□ 추진실적

- 「모두의 학교」 리모델링 공사 완료(9.30) : 인테리어 등 개관 준비(10.28 개관)
- 시민과 함께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마련(~10월)
 - 지역사회 이슈 등을 주제로 시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기획·설계 및 운영
 - 청소년, 청년, 성인, 중·장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향후계획

- 「모두의 학교」 개관 및 운영 : '17.10.28 ~

2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지원 확대

1 평생학습의 중심, 서울시민대학 운영 활성화 추진

인문학적 교양 중심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산

□ 사업개요

- 교육장소 : 시민청, 은평·중랑·뚝섬학습장, 대학연계 강의장 27개소
- 교육내용 : 인문교양을 포함한 분야별 270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 1,341백만원(시비)

□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17. 3~12월	• 270개 강좌 운영, 12,000명 학습참여	289개 강좌 12,905명	107

□ 추진실적

- 인문교양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 대중적 인문학 및 인문교양 과정 운영(’17년 9월말 12,905명) ※ 하반기 시민대학 개강(9월~)
-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과정(학점은행제) 운영
 - 총 103명 중 학점취득 97명(평생교육방법론, 교육사회학, 평생교육론 등)
- 실무전문가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역량강화 과정 운영
 - 독서·논술·토론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문독서지도사 과정(’17년 상반기 88명)

□ 향후계획

- 시민대학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성과 평가 : ’17.10~12월

②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참여와 실천' 중심의 다양한 시민학습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책무)
- 사업내용 : 프로그램 공모사업, 동아리 지원, 민주시민포럼 운영 등
- 사업비 : 599백만원(시비)

□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17. 4~12월	• 80개(프로그램 30개, 동아리 50개)	• 115개	144
포럼 및 시민정책가 워크숍 운영	'17. 4~12월	• 5회 개최·운영	• 8회	160

□ 추진실적

- 현장중심의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4월~)
 -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확산
 - ▶ 수탁기관 : (사)흥사단, 2년 운영('17. 4. 3~'19. 4. 2)
-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4·7월, 2회)
 - 제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17. 4.12)
 - ▶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평생교육국장 등 15인(2년 임기)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17년 운영 및 '18년 사업계획 논의

□ 향후계획

- 시민학습프로그램 운영 : '17.10~11월

③ 온라인 평생학습의 중심, 「평생학습포털」 운영 활성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제공 (<http://sll.seoul.go.kr>)

사업개요

○ 사업내용

- 6개(인문학, 자격증, 외국어, 가족, 취미, 정보화) 분야 556개 과정 운영
-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기능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

○ 사업비 : 620백만원(시비)

추진목표

(’17. 9월말 기준)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
사이버학습강좌 운영	’17. 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자격증 등 556개 과정 • 수강신청 인원 19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6개 과정 운영 • 수강신청 11.5만명 	100 60
평생학습포털 기능 개선	’17. 3~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개선 및 통계기능 개발(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6월) • 사업추진중(7~12월) 	60

추진실적

○ 온라인 및 모바일 활용 사이버 강좌 운영

- 인문학, 외국어, 자격증 등 임차과정(308개), 공동활용(248개) 과정 운영
 - ▶ 시민요청 학습콘텐츠 적용(요리, 건강, 은퇴설계, 치매교육, 자녀교육 등 60개)
- 지식 충전소(863편) : 5분 내외의 최신이슈 중심의 단편 콘텐츠 제공
 - ▶ 수강저조 강좌 68편 교체,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트렌드 콘텐츠 63편 추가

○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3~6월)

향후계획

- 사이버 강좌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 ~ ’17.12월
- 평생학습포털 기능개선 사업 추진 : ~ ’17.12월

참 고 자 료

참 고 1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78호, 2017.1.5., 제정]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02-2133-3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혁신교육지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78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54호, 2016.12.29.,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02-3999-3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마을과 학교의 협력 지원 사업
3. 학교 밖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지역연계 교육복지 지원 사업
5.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6.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담당자를 상호 파견하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평가, 연장 및 지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지정 2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 마다 혁신교육지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
3. 혁신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4. 연차별 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
5. 혁신교육지구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제고와 관련된 사항

제7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 협의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교육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협의
3.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과 시에서 각각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회의 임기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간사는 교육청과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54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는 본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